

제93차 강원대학교 교수회 대의원회 회의록

■ 개최일자 : 2026. 6. 4. (목), 17:00

■ 개최장소 : 각 캠퍼스별 회의실

■ 참석현황

참석자 (20명)	우흥명, 최익영, 김대기, 이승환, 이유진, 정천순, 하석진, 이승형, 서영호, 남궁심, 한갑수, 강상구, 김이경, 최용철, 박문수, 남기택, 김승렬, 박훈, 김용재, 구자문
위임장 제출 (13명)	박정애, 김병철, 박기복, 한은택, 신동룡, 박현주, 서수련, 김정범, 황지현, 이원상, 김영래, 노효련, 최상일
불참자 (9명)	이은송, 김문섭, 이창욱, 양희정, 김영록, 이윤숙, 박원선, 김태수, 김형건

■ 안 건

구 분	안 건 명
심 의	1. 교수회 규정개정안 심의 2. 심의결과: 수정가결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서명: 교수회】

□ 개(제)정 이유

- 통합 대학 학칙에 따라 통합 전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가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
 - 제4기 강원대학교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의결(2026년 2월)

□ 주요 내용

- 선출 대의원의 총 정수는 50명 이내로 하며, 캠퍼스별 선출대의원 수는 각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5인(캠퍼스별 교수회장 1인, 여교수회장 1인), 사무총장 1인, 정책국장 1인, 감사 2인으로 한다.
-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회비는 교수회의 자율적 사업 또는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부칙)
 -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일(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통합 당시의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이 통합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통합 당시 교수회 부회장 중 춘천캠퍼스 소속 부회장은 춘천캠퍼스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통합 당시 각 캠퍼스 교수회장은 통합 후 해당 캠퍼스 교수회

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통합일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이거나 캠퍼스 교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해당 캠퍼스 전임교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 규정 부칙 제2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는 통합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며, 그 이후의 교수회장 및 부회장(캠퍼스 교수회장 포함)의 선출과 구성은 본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 본 규정 개정안은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전 긴급 정비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우선 확정하되, 통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체 교수총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

☐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없음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합 의: 합의 완료
- 기 타: 해당없음

□ 의견수렴 검토결과

개정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 결과
제2조(구성) ② 교수회 산하에 캠퍼스별 분회(이하 "캠퍼스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조(구성) ② 교수회 산하에 캠퍼스별 분회(이하 "캠퍼스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캠퍼스 교수회는 해당 캠퍼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할 수 있다. (강릉교수회, 삼척교수회)	- 통합 이후 다캠퍼스 체제에서 각 캠퍼스 교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캠퍼스 교수회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세칙에서 구체적인 운영을 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능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추후 검토 운영세칙 및 대의원회, 캠퍼스 교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 후 확정 예정임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소속 캠퍼스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삼척교수회)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캠퍼스와 근무지 캠퍼스가 상이한 전임교원은 근무지 캠퍼스의 교수회에 속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제4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회원 수는 재적 회원 중 ----.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의 -----.	제4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회원 수는 재적교수 중 -- --. ④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 (강릉교수회)	용어 통일	수 용

개정안	의견수렴(안)	사유	검토 결과
제5조(대의원회) ⑨ 캠퍼스별 선출대의원 수는 각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비율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숫점(소수점) 이하 높은 캠퍼스 순으로 배정한다.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출대의원의 총 정수 및 캠퍼스별 배정 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에 우선 적용하며, 세부 선출 방식은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5조(대의원회) ⑨ 캠퍼스별 선출대의원 수는 각 캠퍼스의 균형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캠퍼스에 2명의 기본 대의원을 배정한다. - 이하 삭제 - (강릉교수회)	- 단과대학·전문대학원 등의 규모와 인원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다시 인원 비율로 배분할 경우 동일 기준이 이중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다캠퍼스 체제에서 캠퍼스 간 대표성 및 균형 확보 필요 - 균형 있는 의사 반영을 위한 대의원 배정 기준 보완 - 인원산정 등의 복잡한 과정 및 논란을 피할 수 있음	추후 검토 운영세칙 및 대의원회, 캠퍼스 교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 후 확정 예정임
제5조(대의원회) ⑨ 캠퍼스별 선출대의원 수는 각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제5조(대의원회) ⑨ 캠퍼스별 선출대의원 수는 각 캠퍼스에 2명의 대의원을 기본 배정한 후, 이하 각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삼척교수회)	* 통합 정신(물리적 통합을 넘은 정서적 통합,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담보하는 대의원 배정기준 마련. * 통합대학 체제에서 캠퍼스 간 대표성 및 정체성, 균형적 의사소통 구조를 위한 기본 조건 마련.	추후 검토 운영세칙 및 대의원회, 캠퍼스 교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논의 후 확정 예정임

□ 확대간부 회의 의견 및 검토 결과

당초(안)	수정요구(안)	문구 수정(안)	검토 결과
제24조(재정)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재정) ①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구 수정
	② 교수회는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회비는 교수회의 자율적 사업 또는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구 수정

□ 규정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

- 문구 수정 의견: 수정 의견 모두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 함

(본문에 푸른색으로 색인)

－ 제24조 재정 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안	위원회 수정의견	검토 결과
<u>제24조(재정) ① 교수회의 재정은 본교 예산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다.</u> <u>② 교수회는 교수회 임원, 감사 및 사무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③ 교수회는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u> <u>④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u>	<위원회 의견> <u>대학본부 부서(기획혁신과, 재무과 등) 및 이해관계 부서 등과의 합의(확인) 후 추진</u>	교수회 재정에 대한 본교 예산 지원은 통합 교수회 운영에 따른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추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대학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예정임 교수회 수당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월정직책급 등)에 근거한 보직 수행 경비 지급 수행을 위한 내부규정으로서 필요한 조항임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수회는 향후 대학본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음

□ 추진일정

- 의견수렴: 2026. 3. 3.(화). ~ 3. 9.(월)
- 확대간부회의 보고: 2026. 3. 16.(월)
- 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6. 4. 8.(수)
- 교무회의 심의: 2026. 4. 13(월)
- 총장결재: 2026. 4. 13.(월)
- 교수회 대의원회 심의: 2026. 6. 4(목)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대학교 학칙 제22조”를 “강원대학교 학칙 제2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대학교”를 “대학교”로, “전임교원 전원”을 “전임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수회 산하에 캠퍼스별 분회(이하 “캠퍼스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캠퍼스와 근무지 캠퍼스가 상이한 전임교원은 근무지 캠퍼스의 교수회에 속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교수총회’ 의결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를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수총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교수회의’”를 “‘교수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혹은”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서면투표나”를 “서면투표 또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을 “(‘교수총회’의 성립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를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회원 중”을 “교수 중”으로, “휴직”을

“연구년, 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는 제1항”을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본 규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임장은 다수결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를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로, “‘교수회의’ 종료”를 “‘교수총회’ 종료”로, “전자적”을 “전자투표”로, “교수회의 안건”을 “‘교수총회’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를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로, “출석가능회원”을 “출석 가능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를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의기구인”을 “대의기구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 대의원의 총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③ 캠퍼스별 대의원 수는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율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높은 캠퍼스 순으로 배정한다.

제5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각 전문대학원”으로,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 및 각 전문대학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및 제8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선출대의원 수의 변경 사유가 있어도 대의원 총 정수 50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대의원 선정은 본 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 선출 방식은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4조”를 “제28조 및 본 규정 제9조·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항”을 “사항 (별표 1, 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을 “캠퍼스총장, 대학혁신전략실장,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기획혁신처장, 캠퍼스처장,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수회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교수회의”를 “교수총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3항 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일전”을 “3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서면으”를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3인(캠퍼스별 1인, 여교수회 추천)”을 “5인(캠퍼스별 교수회장 1인, 여교수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총장 1인, 정책국장 1인

제9조제1항제4호 중 “2인(캠퍼스별 1인)”을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거쳐 교수회”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장이 속한 캠퍼스 교수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캠퍼스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교수회의”를 각각 “교수총회”로 한다.

⑤ 캠퍼스 교수회장은 해당 캠퍼스 교수회 회의를 주재하며, 그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교수회’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교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2항 중 “선거권자”를 “유효투표수”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연장자 부회장이”를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캠퍼스별 부회장 2인과 여교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여교수 부회장”을 “캠퍼스 교수회장 4인과 여교수회장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대의원회”를 “해당 캠퍼스 교수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총장)”을 “(사무총장 및 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무총장”을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캠퍼스별로 1인을 평교수”를 “평교수”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7항) 전단 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8항) 중 “3분”을 “3분의”로 한다.

① 교수회가 추천할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은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구성 비율과 배정 원칙에 따라 각 캠퍼스 교수회가 추천한다. 이 조의 적용은 학칙 및 평의원회 규정에서 정한 구성 원칙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③ 캠퍼스별 배정 인원은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기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다.

제16조의 제목 “(재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위원 추천) 교수회가 추천할 위원회 교원위원은 해당 연도 현

원을 기준으로 캠퍼스별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대의원회가 선정한다.

제3장의 제목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를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로 한다.

제18조 중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을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방재전문대학원 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각 전문대학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교수회의’”를 “‘교수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 제6항”을 “제9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수회 규정”을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교수회의’”를 “‘교수총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4조 제3항”을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회비는 교수회의 자율적 사업 또는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일(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통합 당시의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이 통합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통합 당시 교수회 부회장 중 춘천캠퍼스 소속 부회장은 춘천캠퍼스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② 통합 당시 각 캠퍼스 교수회장은 통합 후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통합일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이거나 캠퍼스 교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해당 캠퍼스 전임교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본 규정 부칙 제2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는 통합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며, 그 이후의 교수회장 및 부회장(캠퍼스 교수회장 포함)의 선출과 구성은 본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규정개정의 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안은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전 긴급 정비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우선 확정하되, 통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체 교수총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강원대학교 학칙 제22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강원대학교 학칙</u> ’ 제26조----- ----- ----- -----.
제2조(구성) ① 강원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는 강원대학교(이하 “ <u>이 대학교</u> ”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u>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u>	제2조(구성) ① ----- ----- ----- “ <u>대학교</u> ”----- ----- <u>전임교원</u> ----- -----.
② 교수회에 <u>캠퍼스별 분회, 단과대학 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u>	② 교수회 산하에 <u>캠퍼스별 분회(이하 “<u>캠퍼스 교수회</u>”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
<신 설>	③ 단과대학 교수회,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신 설>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

제3조(‘교수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칙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4. (생략)

5. 대의원회가 ‘교수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6. (생략)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혹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투표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투표 전에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교수회의’의 성립 및 의결)

① 학칙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는 출석 가능 회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출석 가능 회원 수는 재적 회원 중 파견, 휴직, 출장, 휴가, 수업, 진료 중인 회원을 제외한 회원 수를

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캠퍼스와 근무지 캠퍼스가 상이한 전임교원은 근무지 캠퍼스의 교수회에 속할 수 있다.

제3조(‘교수총회’ 의결 사항) ① -

-----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수총회’-----.

1. ~ 4. (현행과 같음)

5. ----- ‘교수총회’-----

6. (현행과 같음)

② -----

또는 -----
----- 서면투표 또는 -----

-----.

제4조(‘교수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

----- 교수 중 ---
-- 연구년, 휴직-----

말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칙 제23조에 의한 ‘교수회
의’는 제1항에 따라 회의가 성
립하고, 출석 가능 회원 수의 4
분의 1 이상이 재석한 경우에
한하여 재석 회원의 과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
한 회원은 재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위임장은 투표에 반영하
지 않는다.

③ 학칙 제23조에 의한 ‘교수회
의’에 출석한 회원이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교수회의’ 종료 후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
자적 방식에 의한 투표로 교수
회의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적 방식
에 의한 투표의 경우에는 재적
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 회장 또는 총장에 대
한 불신임은 학칙 제23조에 의
한 ‘교수회의’에서 직접·비밀
투표로 출석가능회원 과반수의

② --- 제27조에 의한 ‘교수총
회’는 본 규정 제4조제1항---
---. 위임장은 다수결
에 따른다.

③ --- 제27조에 의한 ‘교수총
회’---
‘교수총회’ 종료 --- 전
자투표 --- ‘교수
총회’ 안건---.

④ --- 전자투표---
---.

⑤ ---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
--- 출석 가능 회원 ---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칙 제23조에 의한 ‘교수회의’는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회) ①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신 설>

<신 설>

② 대의원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제3항에 따른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재적 교

-----.

⑥ ---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
-----.

제5조(대의원회) ① -----
----- 대의기구로 서 -----.

②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 대의원의 총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③ 캠퍼스별 대의원 수는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④ -----
----- 각 전문대학원 -----
----- 제6항-----
-----.

⑤ 제3항에 따른 비율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높은 캠퍼스 순으로 배정한다.

⑥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

수가 51인 이상인 경우 1인, 101인 이상인 경우 2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성별이 상이한 1인을 대의원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선출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해당 대학(원)의 규칙에 따른다.

⑤ 제3항의 대학(원)별 선출대의원 정수는 해당 대학(원)이 선출대의원을 선출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학(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신설>

제6조(대의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학칙 제24조에 따라 심의한다.

-----.

-----.

⑦ 제6항-----

-----.

⑧ 제6항-----

-----.
단, 선출대의원 수의 변경 사유가 있어도 대의원 총 정수 50명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

⑨·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⑪ 대의원 선정은 본 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 선출 방식은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대의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 각 호----- 제28조 및 본 규정 제9조·제14조-----
-----.

1.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 5. (생략)

6. 총장, 의장, 재직교수의 15분의 1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신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생략)

2. 학칙 제23조에 따라 교수회 회장이 ‘교수회의’에 부의하려는 사항

3.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4. 5. (생략)

1. -----

----- 사항 (별표 1, 2)

2. (현행과 같음)

3. 캠퍼스총장, 대학혁신전략실장,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기획혁신처장, 캠퍼스처장, 사무국장---

4. 5. (현행과 같음)

6. -----
-- 1 이상-----
--

7. 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제27조 및 제28조-----
---- ‘교수총회’-----

3. 제4조제3항 및 제4항-----

--

4. 제5조제3항 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6. 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6.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회장

유고 시 후임자 선출

7. (생략)

<신설>

제7조(대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 대의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3일전까지 일정과 안전에 관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일정과 안전만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안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같음)

<삭제>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제7조(대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 ----- 월 1회 -----

----- 1 이상-----
-----.

② ----- 3일 전-----

----- 3분의 1 -----

-----.

③ -----

----- 서면이나 전자투표-----

-----.

제9조(임원 및 운영 조직)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생략)

2. 부회장 3인(캠퍼스별 1인, 여교수회 추천 1인)

3. 사무총장 2인(캠퍼스별 1인)

4. 감사 2인(캠퍼스별 1인)

②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생략)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춘천캠퍼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춘천캠퍼스 직무를 대행하고, 삼척캠퍼스 부회장은 삼척캠퍼스 분회 회의를 주재하며 소집과 의결은 ‘교수회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교수회의 사무를 총괄

제9조(임원 및 운영 조직) ① -----.

1. (현행과 같음)

2. ---- 5인(캠퍼스별 교수회장 1인, 여교수회장 -----)

3. 사무총장 1인, 정책국장 1인

4. --- 2인

② -----

-----.

---- 거쳐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회장이 속한 캠퍼스 교수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캠퍼스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캠퍼스 교수회장은 해당 캠퍼스 교수회 회의를 주재하며,

한다.

<신 설>

⑥ 감사는 교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계연도 후 처음 열리는 ‘교수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회의’ 개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⑦ (생략)

제10조(회장) ① (생략)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선거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④ (생략)

제11조(회장의 임기) ①·② (생략)

③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교수회’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교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

----- ‘교수총회’-----
-----.

‘교수총회’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조(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유효투표수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장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대의원회에서 승계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연장자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캠퍼스별 부회장 2인과 여교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의 여교수 부회장을 두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생략)

③ 부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후임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생략)

제13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대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캠퍼스별로 1인을 평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의 추천과 대의원회의

-----.

----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부회장) ① ----- 캠퍼스 교수회장 4인과 여교수회장 1인-----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해당 캠퍼스 교수회----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총장 및 정책국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

제14조(감사) ① ---- 평교수 -----

심의를 거친다.

② (생 략)

제15조(대학평의회 위원 추천)

① 교수회가 추천할 대학평의회 교원 평의원은 대의원회가 선정한다.

② (생 략)

③ 대의원회는 별도의 입후보 없이 비밀투표를 통해 대의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나머지 교원 평의원을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실행에 앞서, 대의원회는 어느 한 캠퍼스 소속 교원 평의원의 최소 인원을 정한다.

⑤ 제3항의 실행에 앞서, 대의원회는 강원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2조제6항에 기초하여 여성 교원 평의원의 최소 인원을 정한다.

⑥ 제3항의 실행 결과, 제4항과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대학평의회 위원 추천)

① 교수회가 추천할 대학평의회 교원 평의원은 「강원대학교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구성 비율과 배정 원칙에 따라 각 캠퍼스 교수회가 추천한다. 이 조의 적용은 학칙 및 평의회 규정에서 정한 구성 원칙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캠퍼스별 배정 인원은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기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5항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순위 득표자(들)의 순위를 올리되 이미 충족된 다른 조건이 유지되도록 순위를 조정한다. 제4항과 제5항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을 먼저 충족시키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제5항을 충족시키도록 순위를 조정한다.

⑦ 대의위원회는 한 단과대학(원)에서 두 명 이상의 교원 평의원을 추천하지 않는다. 제3항의 실행 결과, 한 단과대학에서 두 명 이상이 추천 순위에 드는 경우, 그 중 최다득표자만을 추천한다. 이 제약조건은 제6항의 적용에 앞서 적용한다.

⑧ 대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위원회 위원 추천) ① ~ ④ (생략)

제3장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④ -----

----- 아니한다. <후단
삭제>

⑤ -----
----- 3분의 -----

-----.

제16조(위원회 위원 추천)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제18조(구성) 각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교수회를 둔다.

제19조(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3. (생략)
4.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
5. ~ 8. (생략)

제20조(임원 및 선출) ① (생략)

- ② 회장은 대학(원) ‘교수회의’에서 선출한다.
- ③ (생략)
- ④ 임원의 자격은 제9조제6항에 준한다.

제21조(운영) 대학(원) 교수회는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교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

제18조(구성) -----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방재전문대학원 소속 -----

-----.

제19조(기능) -----

-----.

1. ~ 3. (현행과 같음)
4. 각 전문대학원장-----

5.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임원 및 선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 ‘교수총회’-----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제9조제8항-----
-----.

제21조(운영) -----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

제22조(회원의 권리) ① -----
‘교수총회’-----

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수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생략)

제23조(회원의 의무) ① (생략)

② 회원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재정) ①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수회원의 회비,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교수회는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수회는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4조-----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재정) ①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비는 교수회의 자율적 사업 또는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 제26조에 따라 강원대학교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수회

제2조(구성) ① 강원대학교 교수회(이하 “교수회”라 한다)는 강원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수회 산하에 캠퍼스별 분회(이하 “캠퍼스 교수회”라 한다)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교수회,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여교수회를 둔다.

④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에 속하지 않는 전임교원은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원)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속 캠퍼스와 근무지 캠퍼스가 상이한 전임교원은 근무지 캠퍼스의 교수회에 속할 수 있다.

제3조(‘교수총회’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교수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수회 회장 등 임원의 선임
2. 총장 선임
3. 총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과 절차
4. 교수회 규정의 개정에 대한 심의
5. 대의원회가 ‘교수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6. 총장, 의장, 재직교수의 1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투표 전에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교수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출석 가능 회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출석 가능 회원 수는 재직 교수 중 파견, 연구년, 휴직, 출장, 휴가, 수업, 진료 중인 회원을 제외한 회원

수를 말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본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 가능 회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재석한 경우에 한하여 재석 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장은 다수결에 따른다.

③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에 출석한 회원이 제2항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교수총회’ 종료 후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로 ‘교수총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투표 혹은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수회 회장 또는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에서 직접·비밀 투표로 출석 가능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칙 제27조에 의한 ‘교수총회’는 캠퍼스간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제5조(대의원회) ①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의기구로서 대의원회를 둔다.

②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 대의원의 총 정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③ 캠퍼스별 대의원 수는 캠퍼스 소속 전임교원의 현원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현원은 해당 연도 3월 1일 기준 재직 전임교원 수로 한다.

④ 대의원회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과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제6항에 따른 선출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비율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높은 캠퍼스 순으로 배정한다.

⑥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는 재적 교수가 51인 이상인 경우 1인, 101인 이상인 경우 2인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원) 교수회 회장과 성별이 상이한 1인을 대의원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선출대의원의 선출과 임기는 해당 대학(원)의 규칙에 따른다.

⑧ 제6항의 대학(원)별 선출대의원 정수는 해당 대학(원)이 선출대의원을

선출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학(원)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선출대의원 수의 변경 사유가 있어도 대의원 총 정수 50명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다.

⑨ 교수회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⑩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대의원 선정은 본 규정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 선출 방식은 이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제6조(대의원회 심의·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칙 제28조 및 본 규정 제9조·제14조에 따라 심의한다.

1.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그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 1, 2)

2. 연구비, 장학금, 기타보조금 지급원칙에 관한 사항

3. 캠퍼스총장, 대학혁신전략실장, 일반대학원장, 교육혁신처장, 기획혁신처장, 캠퍼스처장, 사무국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4. 교권과 복지에 관한 사항

5. 교원인사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6. 총장, 의장, 재적교수의 15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는 사항

7. 본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본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수회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위원 추천

2. 학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교수회 회장이 '교수총회'에 부의하려는 사항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 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수회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7.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장직을 승계할 부회장의 지명에 관한 사항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제7조(대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 ① 대의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장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일정과 안건에 관한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일정과 안건만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반영) 총장은 교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임원 및 운영 조직) ①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캠퍼스별 교수회장 1인, 여교수회장 1인)
3. **사무총장 1인, 정책국장 1인**
4. 감사 2인

② 교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국 및 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회장은 교수회를 대표한다.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결 등에 따라 민주적으로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이 속한 캠퍼스 교수회장은 회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해당 캠퍼스에 관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캠퍼스 교수회장은 해당 캠퍼스 교수회 회의를 주재하며, 그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강원대학교 교수회**'규정을 준용한다.

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교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감사는 교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회계연도 후 처음 열리는 ‘교수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총회’ 개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감사 결과를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⑧ 교무회의 구성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강원대학교 부속시설의 장이 아닌 연구소 소장, 센터장, 학부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장) ① 회장은 전체 회원(과건, 휴직 제외)의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교수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 및 투표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장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대의원회에서 승계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부회장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캠퍼스 교수회장 4인과 여교수회장 1인을 두

고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부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후임자는 해당 캠퍼스 교수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총장 및 정책국장) 사무총장과 정책국장은 회장이 대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평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회장의 추천과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대학평의원회 위원 추천) ① 교수회가 추천할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은 「강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및 학칙에서 정한 구성 비율과 배정 원칙에 따라 각 캠퍼스 교수회가 추천한다. 이 조의 적용은 학칙 및 평의원회 규정에서 정한 구성 원칙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대의원회는 교수회장을 대학평의원회 교원 평의원으로 추천한다.

③ 캠퍼스별 배정 인원은 회장의 임기에 맞추어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기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다.

④ 대의원회는 한 단과대학(원)에서 두 명 이상의 교원 평의원을 추천하지 아니한다.

⑤ 대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수회가 추천한 교원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위원 추천) 교수회가 추천할 위원회 교원위원은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캠퍼스별 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대의원회가 선정한다.

- 제17조(자료제출) ① 교수회 회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 및 각 전문대학원 교수회

제18조(구성) 각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방재전문대학원 소속 전임 교수들로 구성되는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교수회를 둔다.

제19조(기능)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원) 교수회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신임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교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각 전문대학원장의 추천
5. 교수회 대의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소속 교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장 또는 재직 전임교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임원 및 선출) ① 대학(원) 교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 ② 회장은 대학(원) ‘**교수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 및 총무는 소속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임원의 자격은 제9조**제8항**에 준한다.

제21조(운영) 대학(원) 교수회는 ‘**강원대학교 교수회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원 선출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수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교수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교수회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회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누린다.

제23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교수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적정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제24조에 따라 정해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는 회원이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적정절차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24조(재정) ① 교수회의 공식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대학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비는 교수회의 자율적 사업 또는 보충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외 교수회 연합회 회비와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공동비용으로 하며, 해당 연도 현원을 기준으로 한 캠퍼스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회계연도) 교수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19. 11. 27. 규칙 제174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28. 규칙 제 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일(202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통합 당시의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이 통합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통합 당시 교수회 부회장 중 춘천캠퍼스 소속 부회장은 춘천캠퍼스 교수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통합 당시 각 캠퍼스 교수회장은 통합 후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다만, 통합일 현재 해당 직위가 공석이거나 **캠퍼스 교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합 이후 해당 캠퍼스 전임교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가 해당 캠퍼스 교수회장(교수회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본 규정 부칙 제2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과조치는 통합일로부터 2년간 적용하며, 그 이후의 교수회장 및 부회장(캠퍼스 교수회장 포함)의 선출과 구성은 본 규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조(규정개정의 경과조치) 본 규정 개정안은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전 긴급 정비를 위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우선 확정하되, 통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체 **교수총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친다.